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27일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김재형, 신정호,  
이성배, 이승미, 김제리,  
송아량, 오현정, 이광호,  
이광성, 장상기 의원(11명)

## 1. 제안 이유

- 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
- 이러한 편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약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평소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기자전거 등의 관련 장비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의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여객자동차, 항공, 도시철도,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 이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8호)

나.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장치 마련 (안 제3조제3항)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④ (생략)</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제3항에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전기자전거 구입비, 헬멧 구입비, 차량 구입 및 운영비

####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
- 2018년 제1회 추경안에서 전기자전거 1,000대 도입 예정이며, 비용추계 기간인 2019~2023년 동안 전기자전거 1,000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헬멧 개당 구입비용은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개당 20,000원으로 가정
- 관리인력은 기존 인력 활용, 차량구입 물량은 2018년 추경 산출기준 활용
  - 차량구입 물량은 2018년 추경 산출기준(공공자전거 6,000대, 차량 39대)을 고려하여 1,000대에 차량 7대를 적용함
  - 차량구입비 1톤 화물차 대당 2,500만원, 대당운영비는 연간 700만원 적용

#### 다. 방법

- 비용추계 기간인 2019~2023년까지 전기자전거 도입물량은 2018년 추경기준 1,000대로 가정하여 전기자전거 구입비, 헬멧 구입비, 차량 구입 및 운영비를 추계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264,000천원 × 5년  
= 11,32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전기자전거 구입, 헬멧구입, 차량구입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	-	-	-	-	-	-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3조 제3항	전기자전거 구입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10,100,000
		헬멧구입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차량구입 및 운영비	224,000	224,000	224,000	224,000	224,000	1,120,000
		소계(b)	2,264,000	2,264,000	2,264,000	2,264,000	2,264,000	11,320,000
□ 총 비용(b-a)			2,264,000	2,264,000	2,264,000	2,264,000	2,264,000	11,32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3705-1281

e-mail : pjc99@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전기자전거 구입비, 헬멧 구입비, 차량 구입 및 운영비

###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264,000천원 × 5년  
= 11,32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전기자전거 구입, 헬멧구입, 차량구입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 세부 산출 내역

- 연간 전기자전거 구입비

$$\begin{aligned} &= (\text{전기자전거물량} \times \text{가격}) + (\text{단말기물량} \times \text{가격}) + (\text{배터리물량} \times \text{가격}) \\ &= (1,000\text{대} \times 1,000\text{천원}) + (1,000\text{개} \times 520\text{천원}) + (2,000\text{개}(\text{교체용 포함}) \times 250\text{천원}) \\ &= 1,000,000\text{천원} + 520,000\text{천원} + 500,000\text{천원} \\ &= 2,020,000\text{천원} \end{aligned}$$

- 연간 헬멧구입비 = 연간 구입물량 × 개당 가격

$$\begin{aligned} &= 1,000\text{대} \times 20,000\text{원} \\ &= 20,000\text{천원} \end{aligned}$$

- 연간 차량구입 및 운영비

$$\begin{aligned} &= \text{차량구입비} + \text{차량운영비} \\ &= \{7\text{대}(\text{추경 산출내역 기준}) \times 2,500\text{만원}\} + \{7\text{대} \times 700\text{만원}\} \\ &= 224,000\text{천원} \end{aligned}$$

### <참고>

#### ○ 공공자전거 현황 및 계획(2018. 8월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자전거(대)	2,000	5,600	20,000	25,000	30,000